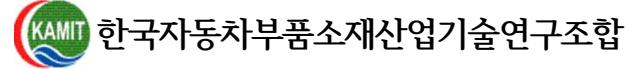


한국자동차연구원



2025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
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의 세부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한국기계연구원장

한국자동차연구원장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 이사장

1 사업 목적

-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용플랫폼 연계부품 개발환경 고도화, 디지털 전환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EV플랫폼 연계부품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2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관련 자동차부품기업
- 공통 우대사항
 - 매출(수출) 및 고용의 성과 계획이 구체적이고 정량적 목표가 높은 기업
 - 본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
 - 지원기관 인프라 연계성이 높은 기업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공장, 기술연구소 등 포함)을 보유한 기업

3 지원 분야 및 내용

- 지원 분야 및 대상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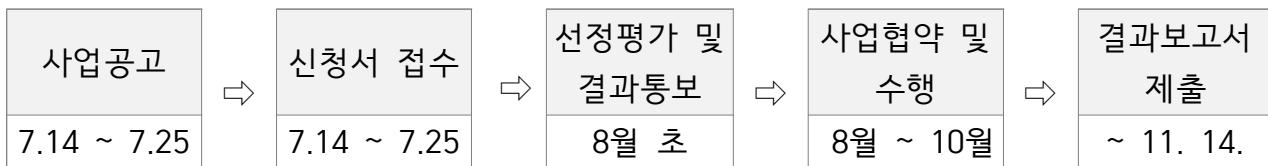
지원분야	대상 부품		
EV플랫폼 연계부품	가. 워터펌프 나. 컴프레셔 다. 밸브 라. 열교환기	마. 냉각플레이트 바. 배터리팩케이스 사. 기타	

- 지원 내용 ※세부내용 하단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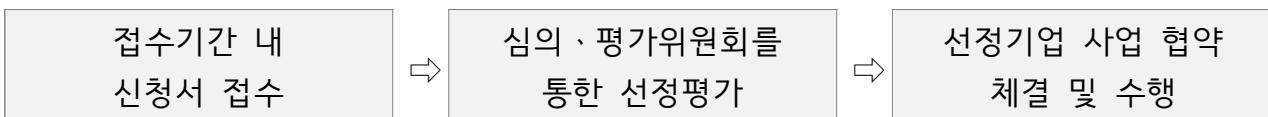
지원분야	지원건수
시험평가인증 지원	3건
기술지도	7건
기술사업화 지원	5건

4 지원 세부 내용

□ 지원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지원 건수 미달 시 수시접수 진행 → 지원기관 검토 후 지원 실시

□ 세부 내용

* 항목 별 교차 중복지원 불가능

연번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건수	비고
①	시험평가인증 지원	*보유장비 및 구축한 시설 장비를 활용한 부품 성능 평가 지원 *보유장비 및 구축한 시설 장비는 첨부1의 부록 참조	3건	①)최대 4,000천원/건 (시험자그 등 소모재)
②	기술지도	EV플랫폼 및 연계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애로기술 *컨설팅 *기술지도 지원 건수 별 최대 컨설팅 횟수는 4회이며, 전문가 활용비(현금)로 지원예정	7건	최대 1,200천원/건 (컨설팅 횟수별 차등 지급)
③	기술사업화 지원	EV플랫폼 연계부품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전시회 참가, Pre-마케팅 자료 제작 등)	5건	최대 5,000천원/건 (기업부담금 10%)

1) 시험자그 등 소모재 : 시험평가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 비용

5 접수방법 및 지원기간

- 접수기간 : 2025. 7. 14.(월) ~ 2025. 7. 25.(금) 까지
- 지원기간 : 2025. 10. 31.까지 (3개월)
- 공고문 내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작성/스캔 후 추가파일과 함께 이메일 전달

6 신청 및 문의처

(시험평가인증 지원) 한국기계연구원

(46744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41번길 48,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 담당자 : 김인호 선임 Tel. : 051-310-8149 E-Mail : inhokim@kimm.re.kr

(기술지도) 한국자동차연구원

(31214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세로 303)

- 담당자 : 신윤혁 책임 Tel. : 041-559-3284 E-Mail : yhshin@katech.re.kr

(기술사업화 지원)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

(46034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4로 45)

- 담당자 : 주진희 과장 Tel. : 051-728-6607 E-Mail : jhju@kamit.re.kr

7 신청 시 유의사항

이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구 분	신청시 유의사항
지원제외대상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기업의 부도 ■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3호(2022. 6. 24.)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신청 양식

붙임 1. 시험평가인증 지원 신청서 등 양식 및 부록

붙임 2. 기술지도 신청서 등 관련 양식

붙임 3. 기술사업화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양식